

특정업무비 및 판공비 지급규정

문서번호	BSKS-3-1-33
제정일자	2007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1/2

2007.03.01.제정 2012.01.01.개정 2019.07.16.개정 2022.04.15.개정 소관부서 : 사무처

제 1 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부산경상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.)의 특정업무비 및 판공비를 지급함에 있어 지급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**제2조(정의)** 특정업무비라 함은 보직자에게 지급되는 보직수당성격의 수당이며, 판공비라 함은 본교의 부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 불가결한 경비인 부서별판공비를 말한다.
- **제3조(지급 한도와 방법)** 특정업무비 및 판공비의 지급 한도액은 매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하고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.
 - 1. 1. 보직수당 및 업무수당은 보직자에게 지급되는 직무수당 성격의 경비로서 월정액으로 계좌로 지급한다. 지급금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<개정 2012.01.01., 2019.07.16.>
 - 2. 부서별판공비는 지출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쓰이는 비용으로서 월정액을 부서별 관리 책임자에게 지급하며 부서별 책임자는 별도의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나 사용내역을 별도로 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.
 - 3. 업무추진비는 본교의 교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때 사용 사유, 소요예산의 사항에 대하여 원인행위 결재 후 법인카드 등 기타방법으로 지급하 고 사용 근거에 대하여 지출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2.01.01.>
- 제4조(기밀엄수) 관계 직원은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판공비 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고등교육법 제14조①항 개정(법률 제9356호)과 관련하여 2009년 2월 9일부터 '학장'을 '총장'으로 한다.



특정업무비 및 판공비 지급규정

문서번호	BSKS-3-1-33
제정일자	2007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2/2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고등교육법 제18조 ②항 개정(2011.07.21.),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과 -8845(2011.11.17.)호에 의거하여 2011년 12월 1일부터 "부산경상대학"을 "부산경상대학 교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2.04.15.)에 의하여 『학생산학취업처』를 『산학처』로 ,『기획처』를 『기획실』로,『입학홍보처』를 『입시홍보실』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